「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검토서」

○ 본 사업은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재료시험실 구축을 위하여 시험·분석장비 세트(13종)를 도입하는 사업으로, 항공·철도사고 원인규명 및 재료 특성 분석에 필요한 전문 시험분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.

○ 도입 대상 장비는 미국 NTSB, 미국 FAA, 프랑스 BEA 등 국제적인 항공안전 및 사고조사기관과 보잉(Boeing), 에어버스(Airbus), GE Aerospace, Pratt & Whitney 등 항공기 및 항공기 엔진 제작사에서 활용하는 시험·분석 수준과 국제시험규격(ASTM, ISO 등)에 부합하는 시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 시험·분석장비임.

○ 본 사업은 단순 규격물품 구매가 아니라 장비별 성능, 국제시험규격 적합성, 측정 신뢰성, 설치 및 시운전 능력, 운영자 교육, 제조사 기술지원, 유지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통합 구축사업임.

○ 동일한 국제시험규격을 만족하는 장비라 하더라도 제조사별로 측정 정확도, 반복성, 소프트웨어 기능, 데이터 관리기능, 사용자 편의성, 부품 공급능력 및 기술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가격만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○ 또한 본 사업은 국내 제조업체가 없거나 공급이 제한적인 장비와 국내외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가 혼재되어 있으며, 공동수급을 통한 통합 구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장비 간 성능 적합성, 설치·시운전, 교육 및 유지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임.

○ 본 사업은 장비별 성능뿐 아니라 장비 간 연계성, 설치·시운전, 교육훈련, 유지관리 및 사후 기술지원 체계를 포함한 통합적인 사업수행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, 가격평가만으로는 적정한 계약상대자 선정이 곤란하다.

○ 따라서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기술성, 성능의 적합성, 사업수행능력 및 사후 기술지원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【검토의견】

상기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,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2026. 8.

국무조정실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